

강원도립대학교 학생회 간부 승인규정

(제정) 1998-06-19 규정 제030호

(개정) 2010-05-03 규정 제252호

(개정) 2016-04-25 규정 제397호

제1조(간부승인) 학생회장을 비롯한 본 대학 학생회의 간부는 본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다.
〈개정 2010.5.3〉

제2조(승인기준) 학생회 간부의 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
2.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학업성적이 B0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 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부 부서원들에 한하여 C0학점 이상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단, 신입생은 입학 성적이 50퍼센트 이내인 자로 할 수 있다.
3.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3조(임기) 학생회장을 포함한 학생회 간부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은 매년도 학생회장 승인일로부터 다음 학생회장의 승인일 직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0.5.3〉

제4조(임명) 학생회 각 부서장은 학생회장이 추천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5조(신고) 학생회장은 선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생회 간부 승인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

제6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1998. 6.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 3)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25)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